

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

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882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10. 08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10월 0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출연(출자)대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출자·출연의 필요성
 -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
 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.2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함.
- 출자·출연금액 : 44,160천원
- 주요사업
 -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
 - 지방세수 확충과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, 학술행사 등의 사업수행
 - 지방세제 개편 등 정책 연구
- 기대효과
 -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,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,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정책연구, 각종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 세정 운영 개선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